

사건보도와 언론인의 법적 책임
일본 판례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

팽 원 순
한양대 신문학과 교수

I. 범죄보도와 인격권

범죄나 그 밖의 형사사건을 보도하는 것은 신문, 방송 등 매스미디어의 권리이며 책임이다.

신문이나 방송이 범죄사건을 보도하는 것은 다른 보도나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범죄란 더 말할 것도 없이 반사회적인 것으로서 국민은 그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 사회에서 어떤 유형의 어떤 범죄가 얼마만큼 일어나고 있으며 또 어떤 자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벌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마땅히 그것에 관해 알림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범죄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는 것은 평온한 국민생활을 위한 불가결의 조건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범죄를 보도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분명히 공공의 이익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점 일본형법 제 230 조의 2의 2 항은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의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은 이를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에 관한 보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전하는 것임을 명문으로 선언한 것이다.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의 범죄행위」라고 한 것은 범죄사건이 발생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용의자를 체포해서 기소하기까지의 과정 즉 공소제기이전의 과정을 보도하는 것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전한 것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형법의 관계조항에는 그러한 규정이 들어있지 않으나 그러한 규정이 들어있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로 범죄에 대한 경·검찰의 수사과정에 관한 보도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 일반적으로 범죄에 관한 보도가 독자나 시청자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끄는 분야인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것은 날마다의 신문의 사회면을 펼쳐보면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범죄사건 관계 기사인 것으로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범죄사건이 사람들의 큰 관심을 끄는 것은 그것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명이나 재산 또는 행불행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사람들의 감성이나 흥미를 자극할 만한 많은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아울러 범인이나 용의자를 찾아내서 추적하고 마침내 체포하여 그 유죄여부를 증명해 가는 과정이 추리와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흔히 매스미디어가 범죄사건을 지나치게 과대하게 선정적으로 보도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지만, 그것은 범죄기사가 그만큼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때문이라고 해도 잘못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범죄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합치되는 것이 틀림없지만 흔히 그 보도한 내용이 범죄에 관계되거나 관계된 것으로 추정된 사람들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즉 범죄보도가 개인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본권인 명예나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과 「충돌」을 일으키는 데서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이다.

II. 보도의 자유와 명예훼손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도 물론 중요한 권리이지만 개인의 명예권도 근대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이다. 아무리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해도 국민은 누구나가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기관에 의해 자기의 명예나 「프라이버시」가 함부로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받을 당연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근래에는 매스 미디어가 거대화하고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짐에 따라 매스 미디어에 의해 명예를 손상당할 경우 개인이 입는 피해의 정도는 매우 심각한 것이며 거의 치명적이라고 할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것이다. 가령 무고한 사람이 신문이나 방송으로 어떤 범죄사건의 용의자로 잘못 보도될 경우 그가 사회적으로 입는 피해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것인지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더욱이 근래 저널리즘에 있어서의 상업주의의 강화와 과당경쟁의 결과로 센세이셔널하고 무책임한 보도가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다 아는 바와 같다. 언론기관은 자본제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른바 「인격에 대한 영리의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영리의 목적을 위한 인격권의 침해는 분명히 언론자유에 부당한 남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스 미디어의 침해로부터 개인의 인격권보호에 대한 관심의 강화는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범죄보도에 있어서 흔히 문제가 되는 것은 범죄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대한 명예훼손인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의 윤노파 살인사건이나 이른바 여대생 피살사건 등의 보도에 있어서 일부 신문이나 방송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나 피해자까지도 그 명예를 심히 손상시키거나 적어도 그들의 명예권 보호를 위해 적절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매우 소홀했다는 일반의 비판을 받은 바가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헌법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제 20 조 2 항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훼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과거에 힘없는 국민들이 흔히 무책임한 언론때문에 피해를 당하고도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했던 사실에 비추어 그러한 무책임한 언론으로부터 국민의 명예나 권리를 보호해 줄 필요를 특히 강조한 것으로 지적할 수 있다. 또 언론기본법이 언론중재제나 정정보도청구권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도 역시 같은 취지에서 나온 것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인격권에 대한 법률적 보호를 지나치게 강화해서 매스 미디어가 개인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를 모두 벌한다면 언론의 자유 특히 보도의 자유는 그만큼 크게 제약을 받지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매스 미디어의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제재를 지나치게 무겁게 하고 그 적용의 폭을 넓게 한다면 그것은 미디어에 대한 무거운 압력으로 작용하여 보도활동에 있어 「자기검열」, 자기억제를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보도의 자유와 명예권보호라는 두 가지의 상충하는 이익을 아울러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양자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두 가지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중의 하나가 이른바 형법의 「진실증명」인 것이다.

우리나라 형법 제 310 조는 「제 307 조 1 항의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규정으로 일본형법 제 230 조의 2 의 1 항은 「...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사실의 진부를 판단하여 진실인 것으로 증명이 되었을 때에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두 조항은 명예훼손의 면책규정으로서의 이른 바 「진실증명」에 관한 조항인 것이다. 이조항에 따르면 언론기관의 보도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나 공익에 관한 것이고 또 그것이 진실임을 증명한 때에는 책임이 면해지고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언론기관이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지않고 보도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한계로서의 조건을 제시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보도에서 이 규정이 적용됨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Ⅲ. 진실증명의 요건

언론의 자유와 조화를 기하기 위한 명예훼손의 특수한 면책사유로서의 「진실증명」의 규정은 대륙법과 영·미법에서 다같이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미국에서는 일찍이 식민지시대인 1936년의 이른바 Zenger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실의 증명이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한다」고 판결하여 처음으로 진실증명의 원칙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본국인 영국의 명예훼손법(Lord Campbell's Libel Act)이 형사나 민사의 명예훼손 사건에 다같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진실의 증명이 면책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제 2 차대전 전에는 신문지법과 출판법에 그런 규정을 두었으나 전후에 형법으로 그 규정을 옮기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후에 형법을 제정할 때 제 310 조에 그런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그 「진실증명」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첫째의 요건은 신문이나 방송으로 보도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어야 하며 두 번째는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명예훼손을 범한 내용의 기사라 할지라도 기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두 가지 요건의 해석과 적용여하가 보도활동의 폭을 정해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도 중에서도 특히 범죄보도가 명예훼손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이기 때문에 그 「진실증명」의 요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범죄보도에 있어 큰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요건에 관해서는 공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과 관계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공공의 이익에 관계되는 사실이란 사회전체의 이익에 관계되는 것 뿐만 아니라 부분사회의 이익에 관계되는 것일지라도 그 사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공표된 때에는 그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그것만으로도 부족하고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해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해석으로 되어 있다. 신문 등 매스 미디어가 보도하는 것을 독자나 시청자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라고 일단 해석되지만 만약 「공익을 도모할 목적」이 아닌 그 밖의 목적으로 된 것이 분명한 때에는 면책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일본에서의 통설로 되어 있다.

「진실증명」에 있어서 다음의 요건은 「진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즉 공표된 사실이 그 내용에 있어 진실에 합치되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을 전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기관의 보도가 무엇보다도 진실에 가깝도록 공정해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뉴스의 취재에 있어서도 항상 사실의 확인에

주력하도록 강조되고 기사의 내용이나 표현에 있어서도 잘못이 없도록 몇 번이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기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언론기관의 가장 큰 책임이 진실을 추구하는데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면 보도된 사실이 어느 정도이면 진실이 증명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더 말할 것도 없이 인간에게 있어 절대적인 진실이란 하나의 극한개념에 불과한 것이며 그런 진실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보도에 있어서도 보도한 내용이 진실과 완전히 합치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법률의 세계에 있어서의 진실이란 인간이 밝힐 수 있는 한도의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재판에서만 비로소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진실로 확인된 것만을 보도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언제나 명예훼손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것은 언론기관에게 극도의 자기억제와 「자기검열」을 강요하여 보도의 자유를 억압하고 유익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재판소가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때에 충분히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특히 범죄보도의 경우 범죄사건을 신속히 보도하는 것은 사회불안을 제거하고 범인의 조속한 검거를 위해서도 흔히 필요한 것이며 평온한 시민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것 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또 범죄사건에 있어서 독자나 시청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것도 범죄사건이 발생해서 용의자를 추적해서 체포하는 수사단계의 과정인 것이다. 그런데 그 수사단계에 있어서 언론기관이 보도하는 범죄사건에 관한 사실들을 거의 대부분이 추측되거나 추정된 것으로서 비록 상당한 증거로 뒷받침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판의 결과로 능히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단계에서 알려진 사실로서 장차 재판의 결과 전복될 수도 있는 불확정의 사실을 보도할 때의 기자의 책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경우에 기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언론의 자유, 보도의 자유의 범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해 일본에서는 언론기관이 보도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책임조각사유가 된다는 것이 최고재판소의 판례로 되어 있다.

일본 최고재는 1966 년에 먼저 민사사건에 관해서 「사실이 진실인 것으로 증명되지 않더라도 그 행위자에게 있어서 그 사실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행위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결국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해석함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또 1969 년에는 형사의 명예훼손사건에 관해서 「(일본)형법 230 조의 2 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21 조에 의한 정당한 언론의 보장과의 조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비록 형법 230 조의 2 제 1 항이 말하는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는 경우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인 것으로 오신하고 그

오신한 것에 관하여 확실한 자료, 근거 등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범죄의 고의가 없고 명예훼손의 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마땅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일본최고재에 의한 이상의 두 판결은 형사와 민사의 명예 훼손 사건에 다같이 적용되는 이른바 「상당성 기준」, 또는 「상당이유 기준」이라고 일컬어지는 원칙을 확립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판례이론은 보도기관에게 다소의 오보는 허용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잠재적으로 심어준다는 비판이 있으며 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란 포괄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것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재판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되므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관의 가치관에 따라 그 판단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에 관해 「상당이유」의 적용을 거부하고 항상 「진실」의 증명을 요구한다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것은 언론기관에게 심한 자기억제를 강제하여 보도의 자유를 사실상 형해화할 위험마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진실증명」규정의 목적은 인격권의 보호와 언론의 자유라는 두개의 상충하는 이익을 조화시키는데 있는 것이므로 신문이나 그 밖의 언론기관에게는 진실을 추구하고 정확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도록 취재상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한편 진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보도했을 때에는 언론기관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이 「진실증명」의 취지로 보아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IV. 「상당이유기준」의 적용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진실증명」이 되지 못할 경우 어느 한도까지 「상당이유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언론기관의 보도가 명예 훼손으로 문제가 되었을 경우라면 그것은 그 문제된 기사를 어떤 취재원으로부터 어떻게 취재하고 보도했는가 하는 것과 상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범죄보도의 경우라면 그 기사를 어떤 기관의 어떤 사람에게서 어떻게 취재하고 보도했는가 하는가에 따라 「상당이유」의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고 적용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상당이유」의 기준을 일본의 재판소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 매스·미디어의 보도에 의한 민

- 형사의 명예훼손사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일본 각급 재판소의 판례에 나타난 「상당이유기준」 적용의 방향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수사당국의 공식발표에 따른 보도의 경우

(1) 언론기관이 수사당국의 공식발표를 갖고 범죄용의를 보도했을 경우에는 뒤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권한이 있는 수사당국자의 공표를 신뢰하고 공표한 대로 정확하게 사실을 보도한 이상 비록 언론기관 자체의 확인이 없었다 해도 언론기관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센다이지판, 1958, 판례시보 205 호 24 항)

(2) 수사내용의 공표를 수사담당경찰의 형사과장과 같은 신뢰할 만한 직책에 있는 책임자가 했을 경우에는 그 공표내용이 잘못된 것이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오사카지판, 1980, 판례시보 987 호 84 항)

(3) 경찰당국자의 공표를 기사화한 경우 일부세부사항이 다르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진실과 합치되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오사카지판, 1958, 판례시보 140 호 22 항)

(4) 경찰책임자의 발표를 근거로 보도한 경우도 사실을 과장표현 했거나 자기의 추리, 억측 등을 보탬을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도쿄고판, 1956, 하민집 7 권 7 호 2058 항)

(5) 사건의 피의자가 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경우에는 피의사실을 확인할만한 증거를 얻지 못하는 한 「상당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도쿄, 1973, 판례시보 742 호 80 항)

(6) 수사기관이 공표한 것을 기사화하면서 기자자신이 직접 취재한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서 잘못된 것이 밝혀졌을 때에는 「상당이유」가 인정되지 못한다. (최고 2 소판, 1974, 매스컴 관계사건재판례집제 1 집 7 항)

(7) 수사당국의 공표를 근거로 보도할 경우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약간의 과장이나 분석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독자에게 객관적 사실과 다른 인식을 줄 정도의 과장이나 분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오사카지판, 1975. 매스컴관계사건 재판례제 1 집 23 항)

이상의 판례에 공통되는 것은 수사당국의 공식발표에 따라 범죄용의를 보도하는 경우에도 언론기관이 그 내용을 과장하거나 각색했을 때에는 「상당이유」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수사당국으로부터의 비공식취재에 따른 보도의 경우

(8)공식발표가 아니더라도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의 설명을 취재해서 보도한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다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상당이유」가 인정된다, (도쿄지판, 1956, 하민집 7 권 5 호 1314 항)

(9)사건의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신고만을 근거로 그 진부를 조사하지 않고 보도했을 경우에는 「상당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오사카지판, 1958, 판례시보 140 호 22 항)

(10)경찰관에게서 사적으로 얻은 정보를 근거로 보도했을 경우 그 범죄사실에 관한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원칙적으로 기사작성에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토쿄지판, 1968, 하민집 19 권 34 호 175 항)

(11)경찰에서 취재기자가 엿들은 것을 근거로 진부를 전혀 확인하지않고 보도했을 경우에는 「상당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삿포로지판, 1970, 판례시보 592 호 37 항)

(12)취재기자가 경찰에서 취재했으나 그 취재원을 밝히지 않아 진실증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당이유」도 주장하지 못한다. (도쿄지판, 1970, 판례시보 592 호 31 항)

(13)아직 수사의 초기 단계이고 사고사일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데도 기자가 자기판단으로 가족이 살해한 것으로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이유」를 주장할 수 없다. (최고 1 소판, 1972, 민집 26 권 9 호 1633 항)

(14)이름도 잘 모르는 경찰관이 피의자에게서 받은 공술조서만을 유일한 근거로 본인의 진술은 들어 보지도 않고 보도했을 경우에는 「상당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토쿄지판, 1977, 판례시보 880 호 56 항)

(15)용의자가 가택수색을 받은 것은 A 사건관련의 혐의 때문이었는데도 기사의 제목이 마치 B 사건에 관련되어 그러한 것과 같은 인상을 주게 했을 때에는 「상당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오사카지판, 1979, 판례시보 956 호 86 항)

3. 언론기관의 독자적인 취재에 의한 보도의 경우

(16)취재기자가 관계자의 증언을 두루 청취하고 검찰에서 피의자의 조서도 충분히 읽고 관계된 회사에 조회도 하고 하는 등 사건의 확인조사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문사에게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히로시마고판, 1954, 고민집 7 권 11 호 885 항)

(17)기자가 A 회사와 이해가 대립되는 정보제공자로부터의 부정확한 정보를 받고 A 회사에게는 확인도 하지않은 채 보도한 경우에는 「상당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오사카지판, 1972, 판례시보 679 호 47 항)

이상 일본의 판례에 나타난 「상당이유」 이론의 적용방향을 살펴 보았으나, 그 내용을 요약하면 수사당국의 공식발표를 근거로 보도할 경우는 특히 의심을 품을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진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취재를 하지 않아도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되어있는 한편 언론기관이 독자적인 취재로 보도할 경우에는 기사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으로 가능한 확인조사를 다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그 판례들의 기본적인 흐름으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수사당국의 공식발표의 경우도 그 내용을 과장하거나 각색하거나 또는 기자 자신의 추리를 보태어 쓸 기사에 대해서는 「상당이유」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수사관들의 비공식취재에 의한 보도의 경우에는 판례가 서로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판례 중에는 비공식취재라도 취재원이 수사관계자인 때에는 확인 취재가 필요치 않다고 한 것과 그런 경우 진부를 가리기 위한 취재를 하지 않으면 기자의 과실로 인정된다고 한 것 등 두 가지가 있는데, 보도의 신속성과 그 정확성 중 어느편에 더 중점을 둘 것인가에 관한 재판관의 가치판단에 따라 이처럼 달라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일본최고재의 태도로는 후자 즉 확인취재의 필요성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V. 중재사건에 나타난 취재형태

우리나라에서도 형법 310 조가 「진실증명」의 규정을 두고 있어 매스 미디어에 의한 보도로 명예훼손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그 규정은 당연히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상당이유」의 기준이 적용될 것인지는 판례가 거의 없고 형법학자들의 입장도 갈라져 있어 알 수 없으나, 「진실증명」규정의 취지로 보아서도 역시 같은 취지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언론기관이 오직 「진실」만을 보도해야 하고 진실을 증명하지 못할 때에는 언제나 명예훼손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 보도의 자유가 억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경우 어느 정도의 것을 「상당이유」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의 판례를 기다려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충분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언론기관들이 범죄보도에 있어서 어떤 취재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취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취재원과 취재형태, 취재방식 등이 「상당이유」기준과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한 취재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다루어 온 매스 미디어가 관련된 명예훼손사건에 나타난 기자들의 취재형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하는 문제된 사건의 기자들이 어떤 취재원에서 어떻게 취재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중재조서」에 기록된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1. 경찰, 검찰에서 취재

(1) 경찰의 「사건보고서」에 의거 (강간피해자 제소)

(2) 경찰의 「고소내용」에 의거 (농협대출 부정사건)

(3) 경찰 「조사내용」에 의거 (노부부살인사건)

(4) 경찰의 「진술내용」(")

- (5) 경찰 「조사보고서」 (")
- (6) 신청인의 「경찰진술」 에 의거 (남편 고발사건)
- (7) 경찰의 「구속품신」 을 보고(교원 음화관람사건)
- (8) 경찰의 조사내용을 요약한 「조사요지」 (남편고발사건)
- (9) 형사의 말을 듣고(남편고발사건)
- (10) 검찰 「사건기록」 에 의거 (노부부살인사건)
- (11) 검찰 「조사」 의거 (강원도 학교 부정사건)
- (12) 담당검사에게 전화로 확인(정당방위사건)

2. 그밖의 기관에서의 취재

- (13) 광주시청 감사실장의 「자체조사결과」 (광주 시청직원사건)
- (14) 교육위 「조사보고서」 (빚맞고 돈 뜯은 학부형사건)
- (15) 종교연구소 「보도자료」 의거 (통일교 비판사건)
- (16) 통신 기사인용 (정당방위사건)
- (17) 동료직원들의 증언청취 (광주시청직원사건)
- (18) 투고에 의한 고발을 근거로(주간종교사건)

(19) 이해관계자의 진술, 경위서 의거 (고등학교교원분규사건)

(20) 이웃아파트 주민의 말에 의거 (노부부살인사건)

(21) 「취재녹음테이프」 사용 (복지원사건)

(22) S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S 교회에 헌금한 것으로 추정 (남편고발사건)

이상은 중재위원회에서 다룬 사건들에 관한 중재조서에 나타난 취재형태를 살펴본 것인데 경찰취재의 경우를 보면 공식발표인지 비공식취재인지 분명치 않은 것이 많으나, 비공식취재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여진다. 지극히 간단한 표현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재했는지를 거의 알 수 없게 되어있으나, 그것으로도 책임있는 취재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들이 다수 끼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형사의 말을 듣고」와 같은 것은 일본의 판례로 보아 별도의 취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었나 생각되기도 한다. 자체취재에 있어서는 「투고」에 의한 고발을 그대로 기사화한 것이나, 이웃아파트 주민의 말을 근거로 한 것이나, S 교회에 다니므로 S 교회에 헌금한 것으로 「추측」했다는 것 등은 취재방식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재형태와 취재방식에 대해서는 사건중재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중재조서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중재관계기록을 살핀 바로는 중재위에서 문제된 기사의 내용에 관해 그것의 진부를 가리는데 관심을 갖는 것만큼 문제된 기사를 어떤 취재원에서 어떻게 취재했는지에 관해서도 같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가 받는 인상이다. 그것은 중재위의 성격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명예 훼손으로 문제된 기사의 책임을 가리는데 있어서는 취재형태, 취재방식에 보다 큰 관심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 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 문제된 기사를 어떤 취재원에서 어떻게 취재했는지를 가리는 것이 매스미디어에 의한 명예훼손의 책임을 가리는데 있어서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취재기자가 책임 있는 경찰당국자의 공식발표를 보도한 것인지 수사기관에서 비공식으로 취재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대로 취재한 것인지 또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취재상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불행히도 진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인지를 그 취재과정을 더듬어 밝히게 되면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가려낼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중재위가 사건중재에 있어서 취재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들에도 보다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본의 관계된 판례에 관심을 갖고 「상당이유기준」 문제를 논의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 것이다.

동시에 중재과정에서 밝혀진 명예훼손사건의 취재형태를 소상히 기록한 다음 그 내용을 분석하고 정리하도록 한다면 그것이 선례로서 앞으로의 중재를 위한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VI. 「보도와 인권」 기준제정의 필요성

「이습」의 이야기 중에 장난으로 못에다 조약돌을 던지는 악동들에게 못 속의 개구리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있다.

『당신들 악동들에게는 던지는 것이 작은 조약돌에 지나지 않는지 모르지만 우리들 못속의 개구리들에게는 그 조약돌이 우리를 능히 죽일 수 있는 바위가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매스 미디어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범죄나 그 밖의 형사사건을 보도하는 것이 일상적인 것으로서 늘 그런 기사를 다루어야 하는 기자들에게는 사건기사 하나하나의 대수롭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기사로서 명예권을 침해 당하는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그 조약돌이 사회적으로 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바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스 미디어에 의한 명예훼손과 같은 기본권의 침해가 잦아지게 되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언론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credibility)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국민의 언론기관사이의 일체감을 심하게 해칠 것이 틀림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언론기관은 인권옹호의 기관으로서 일상의 보도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범죄보도에 있어서도 인권보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이다. 보도에 있어서의 인격권 보호의 철저를 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범죄 등 형사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말하자면 「보도와 인권기준」 같은 것을 언론인들이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소망스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취재과정에서 명예훼손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그러한 기준을 제정하여 범죄나 그 밖의 형사사건의 취재보도에 있어 기자들이 그것을 따른다면 인격권 침해로 인한 타율의 규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다. 언론에 대한 타율의 규제를 막기 위해서는 자율에 의한 규제를 충실히 하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런 「보도의 기준」을 제정한다면 오늘과 같은 문제의 논의가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신문학과(문학박사)

□ 저술 : 「비교신문학」(공저) 「악세스권의 연구」 등 다수

□ 현재 한양대학교 신문학과 교수